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취업 거부 금지〉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57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사항	4

I .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8. 13.

(3) 회 부 일 : 2026. 8.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과정에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3조제4항).

Ⅱ. 검토 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 ③ (생략)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u>비전염성결핵환자</u> 에 대하여 <u>결핵환자</u> 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생략)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u> ----- <u>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u> 라는----- ----- ⑤ (현행과 같음)

2. 검토사항

□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¹⁾를 말하며, 결핵환자 수는 2023년 19,540명에서 2025년 17,07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3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최근 3년간 결핵환자 수 >

단위: 명

연도	결핵 환자 수(10만명당 환자 수)
2023	19,540(38.2)
2024	17,944(35.2)
2025	17,070(33.5)

자료: 질병관리청

< OECD 주요국 결핵발생률 현황(2024년 기준) >

단위: 명

순위	국가	10만명당 환자 수
1	콜롬비아	49
2	대한민국	35
3	리투아니아	31
4	멕시코	28
5	라트비아	21
6	칠레	19
7	포르투갈	15
8	터키	13
9	폴란드	11
10	일본	9.8

자료: 「WHO(세계보건기구) 세계 결핵 보고서 2025」

1) 「결핵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 또한 ‘결핵환자’는 ‘전염성결핵환자’와 ‘비전염성결핵환자’로 구분되는데, ‘전염성결핵환자’는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²⁾를 말하고, ‘비전염성결핵환자’는 결핵환자 중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전염성이 소실되었다고 의사가 판정한 환자³⁾를 말함.

□ 현행법 제13조는 ‘전염성결핵환자’가接客업이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 등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결핵예방법」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接客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2) 「결핵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3)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전염성 소실의 판정절차)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염성 소실(消失) 여부는 객담검사의 결과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다.

□ 한편,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 전염성이 없는 자⁴⁾를 말함.

- 잠복결핵감염은 신고 의무가 없어 국내 감염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질병관리청(구 질병관리본부)이 2016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국내 잠복결핵감염률⁵⁾은 33.2%로 조사된 바 있음.

<국내 연령별 잠복결핵감염률>

구분	전체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잠복결핵 감염률(%)	33.2	6.5	10.9	36.4	46.1	48.7	45.0

자료: 질병관리청

□ 잠복결핵감염자는 전염성이 없으므로, 「국가결핵관리지침」 및 「잠복결핵감염 A to Z」 등 질병관리청 지침·간행물에서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음.

「국가결핵관리지침(질병청 지침)」

제4절 자주 묻는 질문

Q7: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제1항에 해당하는 종사자·교직원이 비전염성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 「결핵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5) 전체 인구 중 잠복결핵감염자 수 비율(잠복결핵감염자 수 ÷ 조사 대상 인구 × 100)

A: 결핵예방법 제32조에 따라, 비전염성결핵환자이거나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음.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중사 일시 제한,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 (「결핵예방법」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잠복결핵감염 A to Z(질병청 간행물)」

PART 1 개요

Q4: 잠복결핵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킬 수 있나요?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는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나 직장에서 차별은 없나요?

A: 잠복결핵감염자는 외부로 결핵균을 배출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염성 결핵환자처럼 격리조치가 필요 없고, 직장, 학교 등에 평소처럼 출근, 등교를 하셔도 되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거부, 해고, 면직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2025년 온라인 결핵예방교육 수강자 약 3만 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4%에 해당하는 1,283명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인한 채용 취소, 일시적 근무 제한, 부서 이동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잠복결핵감염자가 실제 고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개정안은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취업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현행법 제32조제3호6)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잠복결핵 검진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잠복결핵감염자’는 ‘비전염성결핵환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비해 증상도 없고 위험도도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해서만 취업 거부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잠복결핵감염자 및 비전염성결핵환자 비교 >

구분	잠복결핵감염자	비전염성결핵환자
결핵균 감염	○	○
현재 결핵 발병	X	○
증상	없음	있을 수 있음
전염성	없음	없음
치료	예방적 치료 가능	치료 필요

- 따라서 취업 거부 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를 명시하는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현행 「결핵예방법」 제13조제4항이 취업 거부 금지의 대상을 ‘비전염성결핵환자’로 한정하고 있어, 잠복결핵

6) 「결핵예방법」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감염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보호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 잠복결핵감염을 이유로 한 취업 거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수 있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96
